



농산을 새롭게  
시민을 행복하게

의안번호	제22호
------	------

<p>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26. 2. 9.



# 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2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2. 9.
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제안설명자 : 안전총괄과장

## 1. 제안이유

- 위원회 서면심사(심의)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심사수당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의2)
  - 전자우편 등 서면의 방법으로 위원회 안건 심사(심의)에 참여한 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

나. 예산조치 : 2026년 추경예산 편성 요구

다. 기타사항

- 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 [기획감사실-486(2026. 1. 9.)]
- 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복지정책과-2269(2026. 1. 14.)]
- 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 [예산실-304(2026. 1. 7.)]
- 4) 입법예고
  - 가) 예고기간 : 2026. 1. 6. ~ 2026. 1. 26. (20일 이상)
  - 나) 예고결과 : 의견 수렴 반영 조례안 수정  
(당초: “서면심의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”  
변경: “전자우편 등 서면의 방법”)
- 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- 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안전정책과(041-635-5622)

## 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### 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심사수당)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자우편 등 서면의 방법으로 위원회 안건을 심사하거나 심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
①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3(심사수당)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자우편 등 서면의 방법으로 위원회 안건을 심사하거나 심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논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심사수당)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자우편 등 서면의 방법으로 위원회 안건을 심사하거나 심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논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심사수당)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자우편 등 서면의 방법으로 위원회 안건을 심사하거나 심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	안 전 총 괄 과 장	우 종 갑
안	안 전 정 책 팀 장	이 상 권 (746-6421)
자	담 당 자	백 동 열 (746-6423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수당 등)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제11조(수당 등) (현행과 같음) <u>제11조의2(심사수당) 소속 공무원</u> <u>이 아닌 위원이 전자우편 등 서</u> <u>면의 방법으로 위원회 안건을</u> <u>심사하거나 심의한 경우에는 예</u> <u>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</u> <u>할 수 있다.</u>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비용 발생 요인: 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 추진
- 관련조문: 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의2(심사수당)

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지급 기준: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13명
- 단     가: 1회당 50천원
- 산출근거: 13명 × 50천원 × 4회 = 2,600천원

나. 추계 결과

(단위 : 천원)

연도 \ 구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출	사무관리비 (운영수당)	2,600	2,600	2,600	2,600	2,600	13,000

3. 작성자

안전총괄과장   우   종   갑

## 〈연도별 증가비용 추계표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6년)	2차년도 (2027년)	3차년도 (2028년)	4차년도 (2029년)	5차년도 (2030년)	계
세 입	2,600	2,600	2,600	2,600	2,600	13,000
시 비	2,600	2,600	2,600	2,600	2,600	13,000
세 출	2,600	2,600	2,600	2,600	2,600	13,000
201-01 사무관리비	2,600	2,600	2,600	2,600	2,600	13,000
○ 운영수당	2,600	2,600	2,600	2,600	2,600	13,000
재원 조달	2,600	2,600	2,600	2,600	2,600	13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 조 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2,600	2,600	2,600	2,600	13,000
	지방세	2,600	2,600	2,600	2,600	13,00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
기 타 (채무부담 민자 등)						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별표2의2  
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

2. 일반운영비(201목)

2-1. 사무관리비(201-01)

다. 운영수당

1) 위원회 참석수당

-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  - 교통비, 식비, 숙박비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준용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
- 공무원의 경우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.

< 예시 : 경기도 수원시 투자심사위원회 >

- 경기도청 공무원 중 건축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수원시투자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수당 지급 가능
- 수원시 관내 교사, 경찰 등 국가공무원이 수원시에서 설치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수당 지급 가능

-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

-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하되, 교통비 등은 미지급
- 단순히 E-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"2)"항목의 심사수당만 지급한다.
-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, 법령·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 등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## 2) 심사수당

- 법령·조례, 규칙 등에 규정\*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.
  - \* 예) 지방세 이의신청심의, 투자심사수당 등
- 법령·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·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.
-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, 법령,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.
- 변호사, 회계사, 감정평가사, 건축사,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.